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 6. 24.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임경오

1. 제 출 자: 성동구청장

2. 제안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소셜벤처 및 창업 기업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기금 출자를 통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용자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출자

1) 출자 개요

- 출자대상: 성동 소셜 임팩트 펀드(가칭)
- 펀드규모: 우리 구 출자 5억 원(총 펀드규모 20억 원)
- 운용기간: 8년(2020 ~ 2028)
- 투자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 20여 개
- 출자내용: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소셜벤처 및 창업기업에 투자 지원

- 2) 출자목적: 소설벤처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 출연 개요

가)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의용도)

나) 우리 구 출연현황

(단위: 천 원)

2004년	2009년	2011년	2013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지원과 관련하여 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위해 2004년부터 4회에 걸쳐 출연하였으나 기금 용자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부족

2) 주요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지원 시 우리 구 용자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시중 금융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기준과 낮은 보증료율(0.8%~1%)을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용자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제5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제6호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개요

- 1)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서울시 업무수탁)
- 2) 설립목적: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3) 주요업무
 - 고유업무: 신용보증 지원, 기본재산 관리(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 출연금 조성
 - 서울시 수탁업무
 - ①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융자 및 이차보전)
 - ②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소상공인 종합지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소셜벤처 및 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금에서 출자를 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융자를 원활하게 보증 받도록 지원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을 출자의 규정으로 제시한 가칭 '성동 소셜 임팩트 펀드' 투자조합 결성의 건에 대해 살펴보면,

- 민간 자금과 공동으로 결성하는 투자조합은 기존의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융자지원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또한 사회투자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투자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자금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5억 원을 출자하여 새로운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운용성과의 체계적 평가 기준 마련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융자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건을 살펴보면,
- 우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총 4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기금 추가 융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증 한도가 40억 원 부족하게 됨에 따라 「성동구 출연금 관련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 1)에 의거하여 4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증액시킴으로써
- 매출액이 적은 지역 내 영세 상공인, 소상공인 등이 5천만 원 이내로

1) 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출연금의 10배수(총 보증한도: 구 출연금 4억 원 × 10배 = 40억 원)

융자를 받을 때 부동산 담보제공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직으로,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보증 총액을 늘리고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보증한도를 증가시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